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입장료등의 감면)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 50%를 감면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단 제7조 제10호 및 제7조의2는 1999년12월31일 까지 적용한다.